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0가단11146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송대리인 A,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원, 박신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상현

변 론 종 결 2023. 4. 28.

판 결 선 고 2023. 6.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31.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된 배당금액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 20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하고, 대한민국(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게 2014. 6.경 5억 원, 2016. 11.경 1억 5,000만 원, 2018. 4.경 1억 5,000만 원의 합계 8억 원을 대출하였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D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 원리금, 지연배상금, 기타 부채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위 대출채무 및 D의 위 연대보증채무는 2020. 3. 11. 기준 377,979,337원이다.

다. D은 2018. 12. 31.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2019. 4. 16.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25.경 서울북부지방법원 E, G(중복)으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21. 4. 29. H이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경매법원은 2021. 6. 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억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위 배당표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취지 제2항 기재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D의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 주장처럼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8, 13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다.

① D이 운영하는 소외 회사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노래반주기를 주문받아 제조·판매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2011년경부터 소외 회사에 전자부품을 공급하면서 계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는 D의 요청으로 소외 회사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2015. 7. 24. 950만 원, 2015. 7. 27. 1,050만 원, 2015. 9. 25. 2억 원을 각각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바 있고, 2018. 9. 10.경에도 D의 요청으로 소외 회사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기 2018. 10. 1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선이자 2,416,440원(이자율 연 18%)을 공제한 137,583,56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기가 지나도록 갚지 않았고, 오히려 D은 피고에게 추가 운영자금 융통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담보를 요구하였고, D은 2018.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과 향후 추가로 차용할 돈을 포함한 2억 원을 변제기 2019. 4. 25., 이자 연 18%로 정하여 차용하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저당권을 실행하여도 이의 없이 수용한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는 2019. 3. 25. 소외 회사에 1,700만 원을 변제기 2019. 4. 15.로 하여 추가 대여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위 변제기까지 피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D은 2019. 4. 1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소외 회사는 십수년간 약 100억 원 상당의 연매출을 올린 노래반주기 제조·판매업체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인 2018년을 기준으로 이익잉여금이 1,949,445,988원, 당기순이익이 393,896,508원에 달하였다. 특히 소외 회사는 I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8. 12. 31.경 2억 원, 2019. 3. 28.경 1억 원을 각각 대출받았는데, 위 각 대출 당시 소외 회사의 신용등급은 BBB로 평가되었고, 국내 신용조사 대상 기업 중 BBB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은 8% 정도에 불과하며, 2016년과 2017년의 경우 BBB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의 부도율은 0.06%에 불과하였다. 또한 소외 회사는 2017년도에는 총 33명가량의 직원을, 2018년도에는 총 32명가량의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2017. 1.경부터 2019. 3.경까지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산재보험 등 사업장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고, 2017. 1.경부터 2019. 2.경까지 법인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이자소득세 등도 모두 납부하여 왔으며,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2019. 4.경 이전까지는 대출금 이자를 연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러던 중 소외 회사는 2019. 4.경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기 연장을 거부당하면서 연쇄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까지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어 갑자기 심각한 자금경색에 빠지게 되었고, 2019. 11. 19. 사업장에 화재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결국 2020. 6. 30.경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③ 피고와 D은 노래반주기 전자부품 거래 등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일 뿐 별다른 인적 관계는 없어 보이고, 피고로서는 소외 회사나 D의 원고 등 채권자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④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은 D과 피고의 관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전후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반복할 정도로 피고의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만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아파트 L동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모임지붕 12층 아파트

1층 397.416㎡, 2, 3층 각 394.616㎡, 4 내지 12층 각 388.45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 노원구 J 대 11408.5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M호 철근콘크리트조 84.514㎡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1408.5분의 41.616. 끝.

